

제4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1. 18(금),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강희진 의원, 김진우 의원, 박윤규 의원, 윤갑희 의원, 윤성승 의원, 이강준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홍평 의원, 이효철 의원, 임정민 의원

- 총 13명 중 12명 참석 : 조중열 의원 불참

의장 강명구 : 13명 중 11분 참석하셨고, 윤갑희 의원님은 곧 오실 예정이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41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나고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에 가면 항상 많이 지체되니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먼저 자문사항이 2건 있습니다. 하나는 2012학년도 2차 추경이고 2013학년도 본예산은 교비와 병원회계가 있습니다. 심의사항과 기타논의사항이 있는데 심의사항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건이고 기타논의사항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사항과 기타논의사항 먼저 논의를 하고 자문사항 중에서 2차 추경하고 병원 교비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학칙심의에 관해서 2~3분 내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기획팀장이 학칙 심의(안)에 대해 설명하다.]

평의원 윤성승 : 입학정원 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줄이는 건가요?

< 간서명 란 >

의장 

간사 김승권 :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책임운영부서라고해서 입학인원이 제대로 차지면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 희망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기획팀으로 요구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팀에서 특수대학원 위원회와 대학원이 포함된 특수대학원 위원회를 열어서 특수대학원 정원과 일반대학원 정원을 전체 통으로 전체 정원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 제로가 됩니다.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대학원과 여유가 있는 대학원 서로 협의 하에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가 제로가 된다고 하셨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의 정원이 늘었는데요?

간사 김승권 : 여기 늘었으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이 줄어듭니다. 일반대학원 정원이 모자라면 여기서 가져가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나중에 예산 질의 때도 저희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되겠지만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 학교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통로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이 줄면 학교의 수입에서도 감소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신 것인지 근거 없이 숫자만 말씀하시니까...

의장 강명구 : 맥락을 덧붙여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편하겠죠.

간사 김승권 : 경영대학원은 책임운영부서이며 입학정원이 조정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100% 채우기 힘들다는 내부사정과 신규 입학정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장 강명구 :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평의원 윤성승 : 49조 관련해서 6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괄호를 쓰고 괄호 안에는 30, 36 이렇게 되어있는데 괄호에 대한 설명이 본문 어딘가에 있습니까?

간사 김승권 : 다음 장에 보시면 국제경영학과 ()는 '리더십과 코칭전공' 이수학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괄호 옆에 별표를 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표가 이 별표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괄호 옆에 별표를 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의장 강명구 : 국제대학원을 맡아 일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국제경영학과 인턴십 MBA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주대가 코이

< 간서명 란 >

의 장

-2-

카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학교에서 국제 대학원이 제대로 크려면 국제경영학 보다는 국제개발협력으로 돌려야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자금지원을 코이카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경영학에서 international MBA와 그것도 안 되니까 리더십과 코칭전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불 적에 경영대학원에 가져 가서 경영대학원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그게 맞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원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와튼스쿨 처럼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 가 원장일 때 코이카 관계자를 만나서 국제개발협력으로 서서히 자금을 움 기려는 시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길게 는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더십과 코칭전공이 신설된 건가요?

간사 김승권 : 새로 신설된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신설된 이유는 뭔가요?

간사 김승권 : 국제대학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대학도 책임운영부서라고 해서 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 도 새로운 사업구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향후에는 리더십과 코칭전공이 유망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국제대학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 하기 위한 노력 과정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럼 시행이 2014년부터 시행하나요? 뒤에 보면 공포일부 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3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간사 김승권 : 맞습니다. 계획은 2013년부터 시작하려 하였으나 주변 환경 을 좀 더 파악한 후 준비를 더 하기 위해 다음 학기로 미룬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예상인원은 몇 명쯤 온다고 되어있나요?

간사 김승권 : 약 30명 정도...

의장 강명구 :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영대학원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영어강의하고 국제대학원은 더 큰대 분야로 나가야지... 누차 말씀드렸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간사 김승권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른 질문해주시죠.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김진우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의료원에 연구소 센터가 많았는데 폐지되는 이유가 뭘니까?

간사 김승권 : 저희들이 알기로 학교와 조금 다르게 의료원은 어떤 사업에 의해 센터가 생기고 사업이 종료되면 센터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없어지는 센터들도 사업의 종료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 생기는 센터는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서 센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개정(안)에 보면 신설은 없고 삭제만 있습니다.

간사 김승권 : 신설은 표 하단에 지역약물감시센터, 심리외상센터,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인체유전체지원센터 이런 것이 신설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칙에 각 학년별 이수학점 누적치가 정해져있는데 이것대로 하면 1~2학년 때는 수업연한으로 나누는 숫자보다 더 적은 학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4학년 때는 학점을 적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건가요? 1~2학년 때 딸 수 있는 학점은 최대한 따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규정한 건가요?

간사 김승권 : 개정 전을 보시면 보통 전체 평균이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게 30씩 맞춘 건가요?

간사 김승권 :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개정 전에는 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조금 적게 과목을 듣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2학년 때는 더 듣는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학년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데 반해서 새로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반드시 1~2학년 때 많은 학점을 들어야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어쨌든 1~2학년 때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점을 적게 듣는든지 이런 여지는 없네요.

간사 김승권 :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생에 대한 배려인가요? 졸업하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학점을 따두라는...

간사 김승권 : 의대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 간서명 란 >

의 장  -4-

평의원 이재호 : 전반적인 겁니다. 공식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5로 나누면 32.8이라고 할 때 적어도 33학점이상 되어야 2학년으로 진급한다는 건데... 저학년 때 학점을 적어도 1/n이상을 따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 실제로 그런 취지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학년 때 적게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외부활동을 하고 3학년 때 학점을 많이 따겠다는 이런 식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의장 강명구 : 탄력성을 죽였다는 말씀이시죠. 미니멈 학점이 한 학기에 12학점인가요? 대부분의 학생이 15학점 듣고 많이 듣는 학생은 18학점...

평의원 임정민 : 최저가 13학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달라지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개정 전에는 여유가 있는 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 틀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던 생각...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에 기반을 두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강명구 : 혹시 이재호 교수님 질문하신 밀바탕에는 행정편의도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 뭐 그런 것이 깔려있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의장 강명구 : 실제로 교무처 업무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정도의 규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탄력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습도 많고 하니까 5년제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서 탄력성을 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졸업이수학점/수업연한*학년*0.9 이런 식으로 하면 몇 학점 정도 학생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 원안처럼 해놓으면 졸업이수학점을 n으로 나누고 그것보다 특히 앞쪽에서 더 받아야 되니까 1~2학년 때 학점을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4년이나 5년이라는 과정을 생각할 때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철학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건가...

의장 강명구 : 교무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 되었죠?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승권 : 그것은 제가 교무팀과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도 있고 교수님께 전달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네

평의원 윤성승 : 학년수료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학점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못하는 건 아니죠? 각 학년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간사 김승권 : 수료와 진급은 다릅니다. 학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진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료는 편입 등에서 학년 수료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니까 1학년 때 열심히 들어야 되지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려면 뭘 들어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그거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계 쪽까지 다 포함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간사 김승권 :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만약에 학기 중에 몸이 아파서 과목을 적게 들었을 경우 1학년 1학기 때는 듣고 2학기 때는 줄어들면 진급을 못하는 거네요?

평의원 김진우 :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학과 전공이 160학점에서 164학점으로 늘었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보는 학생은 없나요? 졸업이 수확점이 더 많아 졌기 때문에...

간사 김승권 : 저희들이 개정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규칙자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11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과정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규칙이 바뀌지 않았음을 지적 받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자세한 내용은 교무회의 때 전부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메일이나 서류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권 : 네

의장 강명구 : 학칙 심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 네. 이의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논의사항에서 대학평의회 추천규정 관련사항 논의인데 이것은 제가 발의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20쪽에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안전으로 올린 이유는 지난번에 학칙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규정이 너무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기 계신 4분의 교수 대표 선출과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차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수하고 직원대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학생대표는 학생회에 학생대표 평의원 선임을 일임해서 두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불필요한 행정낭비 줄이고 효율성 그리고 교수회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법인이 존중하셔서 대학평의회 선출과정을 교수회에 맡기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예산관련 1쪽 보시면 예산의 성립 7조2항에 보면 본 대학교 예산은 총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정관 규정이 2012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에 된 겁니다. 제대로 고치려면 가운데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을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현실에 맞게 고쳐주시고 이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대학 평의회가 건의하는 안전입니다. 토론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평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실제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통해서도 매번 지적되고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바뀌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니까 역시 또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학평의원 교수대표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면 일반 교수님들이 뭘 투표하는지도 몰라요. 각 단과대학별로 추천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교수회 대의원들을 그냥 보내요. 그러면 이 분들 만나서 바쁜 시간 이렇게

때앗느냐는 불평하면서 만나서 한 10분 만에 끝나요. “교수회에 맡깁시다” 하고 끝납니다. 이런 행정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면 건의할까요?

평의원 김진우 : 하시죠.

의장 강명구 : “10조2항에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고 ” 이것은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승 교수님?

평의원 윤성승 : 제가 지금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문구를 보니까 거치고 거쳐 확정된다. 그래서 문구를 좀 바꿔서 순서를 보면 평의원회 자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는데 거꾸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와 의결로 확정된다. 이 정도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진행과정을 생각해보면 대학평의원회 자문 후에 교무회의에서 확정 되지 않습니까? 총장이 편성하는 과정이 교무회의에서 확정되는 것까지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안이 잡히는 것 까지...

의장 강명구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처가 작성하여 교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평의원 이재호 : 아뇨. 저희가 먼저죠. 그 시점이 여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점입니까? 그렇다면 대학평의원회 자문은 그 이전단계입니다.

의장 강명구 : 여기서 편성이라 함은 결정이 아니고 예산안 확정이 되겠죠.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이 조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사회가 의결 해야만 확정하는 것으로... 총장이 편성하거나 교무에서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것...

의장 강명구 : 윤의원님 말씀 들으시면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 이것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나요?

평의원 이순일 : 그렇게 하시면 시간상 순서가 아니라, 전반부 교내에서 이

< 간서명 란 >

의 장



루어지는 것은 편성단계이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된다고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또 그렇게 보면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교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총장이 편성하고 라는 말 하나로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까...

의장 강명구 : 총장하고 대학평의원회는 좀 다르니까... 사립학교법 개정되면서 들어간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업데이트 한다는 느낌에서 넣으면 더 정확한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제시하면 틀림없이 이사회에서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저희가 취지만 의결하면 어떻습니까?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현행법에서 정해진 것이니 그것만 넣되, 법학을 하시는 윤성승 의원께서 추후에 학교 측과도 절차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문구를 완성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의원 임정민 : 저도 그것이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규정은 규정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근데 이것이 규정이 아니고 정관입니다.

간사 김승권 :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규정이예요? 혼돈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중요한 것은 평의원회에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서 개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의장 강명구 : 윤성승 의원님이 검토하셔서...

평의원 윤성승 : 제가 지금 한 것은 그런 취지로 하는데 이런 문구로 제안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바서 문구가 좋으면 바로 받아서 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의 취지의 문구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면...

의장 강명구 : 이런 정도의 취지니까... 자세하게 제대로 써서 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고칠 테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아까 제안하신 문구로 하면...

의장 강명구 : 제안하신 문구로 보내는 걸로요? 다시 읽어보면 7조2항은 “본 대학교의 예산은 총장이 편성,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와 의결로 확정된다.”

평의원 윤성승 : 이것을 왜 요청하는지 취지를 한 줄로 적어서...

의장 강명구 :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김진우 : 괄호는 추가된다는 의미의 괄호이신 거죠?

의장 강명구 :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심의사항과 기타논의사항 마쳤고요. 자문사항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2차 추경 예산안 자문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처장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정전입금 문제가 중간에 걸려서 길어지게 되었는데 모셔서 얘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 먼저가 아니라 병원 먼저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네요. 혼돈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병원 먼저 하시죠.

평의원 임정민 : 의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기타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못 들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혹시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되어서 올라갔던 건지 여쭙 바도 됩니까?

의장 강명구 : 기타논의사항 어떤거...

평의원 임정민 : 기타논의사항이 저희가 자료를 전혀 못 받아서 메일로 먼저 받았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했을 텐데 좀 전에도 저랑 학생위원들과 외부위원 분들께서 처음 듣는 자료여서 의아해 했었는데요.

의장 강명구 : 제가 일주일 전에 드렸는데요.

평의원 임정민 : 기타논의사항을요?

의장 강명구 : 의장이 이수영 씨에게 일주일 전에 드렸고 안전 자체가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의원 임정민 :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미리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의원 이재호 : 워낙 여러해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서...

평의원 임정민 :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고요.

< 간서명란 >

의 장



- 10 -

의장 강명구 : 의장은 자료를 일주일 훨씬 전에 드렸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및 의료원 기획팀 입장)

의장 강명구 : 201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에 앞서, 2012학년도에는 의료원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미 제출함으로 인해 1년간 자문을 못한 공백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행정부원장 김윤기 : 2012학년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2013학년도 본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이 2013학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을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3학년도 법인전출금은 49.6억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법인에서 의과대학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40.3억으로 차액 약 9.3억이 발생합니다. 그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지난해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6.9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확하게 금액을 구분하여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에 기여하는 금액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조건으로 약 4억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추가 반영한 4억은 의료원에서 재단을 통해 본교로 전입된 것입니까? 2012학년도에는 법인전출금과 전입금 차액 16.9억 중 10억은 기본금 증가고, 6.9억이 학교로 지원된 금액인데 이 중 3.9억이 관리비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3억을 순기여 비용으로 보면 맞습니까? 추후에도 의료원이 재단을 통해서 학교에 기여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학교에 기여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금년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명확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전출/전입이라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12학년도

< 간서명 란 >

의

장  - 11

에는 6.9억, 2013학년도에는 9.3억입니다.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유사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의대와 간호대가 학교의 각 단과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합관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전기료 부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학과/송재관의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추가적인 관리비를 상계하고 기여분이 4억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2012년에는 3억, 2013년에는 4억 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본교에 기여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수입 증가분을 보면 웰빙센터를 신축하면서 실제 추가로 증가된 의료수입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페이지에 웰빙센터 신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추가 수입분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진센터가 종합검진과 직업검진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본관이 18년 정도 되었는데, 외래가 포화상태로 본관에서 4,000명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워 외래공간의 약 35%를 웰빙센터로 옮겨 분산시키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 수입 증가분이 가시화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쾌적한 공간 제공과 병원의 진료횟수 증대 노력 등을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수입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웰빙센터를 통해 병원이 확장되면서 기대이익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웰빙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보셔서 광고 부지 매입을 통해서 병원의 확장 등을 고려하면 본교에서도 병원 발전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컨설팅을 할 시에는 부지매입도 고려해주시고, 외부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5페이지를 보면 웰빙 등 임대수입 증가가 4억으로 임대보증금 수입 약 90억과 비교하면 보증금 수입 대비 임대수입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과 임대보증금을 웰빙센터와 본관으로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 10 -

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총 임대보증금 119억 중 본관이 49억, 웰빙센터가 70억이고, 임대수입 62.7억 중 본관이 59.1억, 웰빙센터가 3.6억입니다. 웰빙센터를 신축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보증금과 임대수입은 재계약시 자금여력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본관의 경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임대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웰빙센터도 추후에는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수입을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임대계약은 매년 재계약해서 갱신하는 것인가요?

행정부원장 김윤기 : 갱신은 가능하나, 상가임대의 경우 보통은 3년-5년 정도는 보장합니다. 임대료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반영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료수입 증가율이 7%, 재료비도 7% 증가로 보입니다. 물론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수치겠지만, 의료수입은 시술빈도와 단가, 두 측면을 반영해 계산하였는데 반해, 재료비는 주로 시술빈도보에 연동될 것이므로 의료수입보다는 적은 증가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재료비 편성 시 시술빈도만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행정부원장 김윤기 :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매년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45%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료비 역시 35%-37%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시술빈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약품과 진료재료가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정된 수가가 고시되어 인위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재료비율 35%-37%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신용카드 요율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이 11억입니다. 이것을 병협 차원에서 대처를 하거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방식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다른 결제방식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은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행정부원장 김윤기 : 환자들에게 다른 결제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진료비 할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운 요율 증가로 당황스럽고, 아마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2.2%-2.3%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신용카드 요율증가는 사회적 이슈이니 지켜보도록 합시다.

평의원 이효철 : 의료원이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웰빙센터 완공도 하면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3학년도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웰빙센터 완공으로 교직원들의 기대도 높아졌는데, 수입예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2012학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히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남았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7월부터 MRI, CT 등의 영상수가 인하로 인해 1년에 약 32억 정도 수입 감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공격적인 예산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신 공약을 통해서 비급여 항목 상당부분이 급여로 전환이 예상되고, 초음파 등이 급여전환 시에는 대학병원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들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고가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다소 안정적이지만 7% 증가된 예산편성을 했고, 병원에서는 병상가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외래진료횟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어려운 대외환경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상진료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현재 저희 병원이 타대학 병원 평균 진료횟수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타대학 주당 평균 진료횟수가 3.4회인데 반해, 저희병원은 3.6회입니다. 진료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교수나 간호사 등의 지원 인력이 필요하므로 급격히 증가 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병원장과 임상과장 면담을 통해 진료횟수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국가정책변화나 경제 환경 등이 병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

< 간서명란 >

의

장  - 14

가 될 수 있다' 는 말도 있듯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오히려 더 치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말씀하신 것을 지휘부에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우선, 병원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검진센터에서 12월에서 3월에 검진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연말에 가장 바쁜데, 병원 할인기간이 가장 바쁜 시기와 중복되어 검진센터 이용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중할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검진센터 교원과 직원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평균 80여명 정도였는데 웰빙센터로 옮기면서 약 106명 정도 수용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의 거의 풀 가동되고, 비수기에 동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수기 할인은 원래는 12월에서 2월까지였는데 많은 요청에 의해 12월에서 3월로 1개월 더 늘렸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예비비가 전년에는 5억인 것에 비해 올해는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학년도에 계획된 큰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작년에도 5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웰빙센터와 병원을 연결하는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인건비, 하반기 긴급 사업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 의료수입 감소로 인해 예비비를 줄인 부분입니다. 2013학년도에도 여력이 되면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긴급 사업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본교에서 의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의대와 간호대가 학교 일부이므로 기초학 수업 지원과 전기료 등을 부담을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비 감면 등을 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상호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상호보완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상호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2012학년도 자문을 못해서 질문이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법인전입금이나, 임대수입, 향후 진료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및 의료원 기획팀 퇴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입장)

의장 강명구 : 지금 윤갑희 교장선생님께서 잠깐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윤의원님 없이도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0차 대학평의원회에서 2차 추경예산을 제대로 자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41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2012년도 2차 추경과 2013년도 아주대학교 예산(안)을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각자 모두가 원칙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양보할 것은 조금씩 양보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모두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 2차 추경에 대해 보고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매일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알고 나니 좀 송구합니다. 다 대학을 위하는 마음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짧게 2차 추경 먼저 보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자문 들어가는 순서지만 지난 번 논란을 고려하여 일단 보고말씀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러시죠.

의장 강명구 :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간략하게, 이미 자료 보시고 질문 해주신 것도 있어서 제가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질문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이 2012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2012학년도 2차 추경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16 -

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예전에는 3차 추경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정이 되어서 2차 추경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여기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40차 대학평의회 회의 때 문제가 되었던 건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0차 회의 때 등심위 학생대표 3분을 모셔서 법정전입금과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재정개선계획서를 발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이 문제를 크게 거론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공조직에서는 모든 것을 확실히 문서의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도 있고 또한 2012년 2월 법정전입금 없이 미리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법정전입금 문제에 대한 재단으로부터의 아무런 확약이 없이 또는 문서로 된 기록 없이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대학교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배려와 우리가 지어야 할 원칙 이 양자 간의 균형에 맞춰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일 의원님, 지난번에 했던 문제의 핵심을 한 번 더 짚어 주시지요.

평의원 이순일 : 지금 기획처에서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 가]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자료 가]는 미리 교수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요구한 추가 자료입니다. 조 경숙 팀장님 오셔서 회의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나온 final 버전인데 설명해주시죠.

평의원 이순일 : [자료 가]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부담금 현황을 세부항목별로 써놓은 겁니다. 2011학년도에서 2012학년도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관해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법정 부담금을 재단이 다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교비로 낼 수 있다는 허용 조항이 있었는데 2012년 1월경에 법이 바뀌면서 최소한 사학연금은 법인이 다 내야 합니다. 만약 교비로 보전할 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법인이 부담할

< 간서명 란 >

의 장

 17 -

것인지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 개정이 2012년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 2월분이 문제가 됩니다. 회계연도로는 2011학년도이지만 법 개정 이후기 때문에 2012년 2월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기부담 하였다면 2012 회계연도에 학교법인에서 보전하도록 하면서 2012년 2월분 보전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보시는 것과 같은 자료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평의원회 질문 드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시면 교비부담금액 사학연금 본교란이 비어있는 것이 2011학년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학연금은 전부다 법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1억8천9백만원 정도를... 2011학년도 것을 보시면 10억6천만원 가량을 본교가 교비로 부담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사학연금 중 9억5천5백만원만 법인이 냈고 7억6천만원은 교비로 냈다. 그게 첫 번째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실제 입금되는 날짜와 우리가 납부하는 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일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보시면 교비부담금액은 매월 10일에 지불했습니다. 본교부담금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매달 저희가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은 2012년 2월 24일이 입금일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 것을 저희가 냈다고 한다면 약 11개월간의 선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9억 정도를 12달로 나누신 금액의 거의 1년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한다면 법인이 부담할 부분을 그때그때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분만큼은 교비로 부담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2월분에 대해서 교비로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2011학년도에 법인에서 9억5천5백만원을 주셨고, 본교가 10억6천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거냐는 겁니다. 이것을 다달이 일정금액으로 납부했다 생각한다면 2012년 2월분 중에서도 분명히 본교부담금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인이 낸 9억5천5백만원에 전반부 사학연금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 돈에 2월분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상

< 간서명 란 >

의 장



- 18 -

식선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더라도 문서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몇 월분을 몇 일에 지불한다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는 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2011학년도 2월분 보전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보전을 안 하는 건지? 혹시 법인이 전반부 것은 안 낸 것이고 후반부의 문제가 된 시기의 것은 다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2학년도, 2013학년도의 법정부담금 얼마를 무슨 항목으로 언제 납부하실 거라는 것을 문서로 꼭 받아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2012년분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중 납부예정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선이자 차액만큼의 교비부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약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익히 들은 얘기인데 혹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더 설명해 주시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연금을 제가 납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연금 미납을 하면 혹시 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사학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평의원 임정민 : 네. 만약 1월에 안 내고 2월에 낼 때 1월 것을 같이 내려면 미납금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1월, 2월 합계만 내면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기획처장 김민구 : 교과부에서 해석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고요. 현재로는 2월말까지 실제로 법정부담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으로 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세금 같은 것은 미납요금이 추가로 더 붙잖아요. 그런 형태인지?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이해한 것은 임정민 의원 질문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법인이 2월 28일에 돈을 주면 우리도 2월 28일에 한푼에 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 19 -

평의원 임정민 : 네 맞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그런 형태로 저희가 카운트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과부에 질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학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기때문에 저희는 사학연금을 매월 10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러니까 지금 이순일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얘기 하시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이자는 두 번째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학평의원회 예결산 자문 때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항상 보면 처음 예산 잡은 것과 추경 때 금액 확 달라지고 결산 때 금액 달라지고 왜 달라졌느냐 물어보면 그때 가서 하여간 전화로 우리 이번엔 그것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달라지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서류로 받든지 공식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이 건 좀 적에도 안 맞고 문제가 많다라는데 항상 동의를 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본부도 그렇고 처장님도 그렇고...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문제를 매번 얘기하셔서 저희도 법인에 문서로 달라 얘기를 하는데 법인은 법인대로 생각이 있겠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 상당기간 동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과거 대우사태 이후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당기간 동안은 계속 맞게 지원되었어요. 어쨌든 저희로서도 요청을 하고 문서로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근래 2~3년 내에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산팀장 조정숙 : 본예산 대비 추경이 달라진 적은 있었지만 추경 예산 대비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추경이 거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 하는 추경이었고.

예산팀장 조정숙 : 2차 추경이요.

평의원 이재호 : 네.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1월인가 12월에... 1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1월에 전화 받아서 액수가 확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면 그동안 예상했던 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작년인지 제작년 쯤...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 조정숙 : 2010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2010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나 그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서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또 질문을 이렇게 주셔서 질문에 답을 만드느라 어제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법인하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하려고 찾아갔지만 두 분이 공교롭게 출장을 가셨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저희도 대답하기도 참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질문하시면 대답해야하지만요.

의장 강명구 : 처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평의원 박윤규 :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안내면 회계 상 문제는 없나요?

평의원 이순일 :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금하다니요?

평의원 이순일 : 내야하는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내야하는데 법인에서 돈을 안내고 어차피 돈은 나가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비로 나가는데 회계 상은 문제가 없는 건지?

평의원 이순일 : 그게 처리상 괜찮은지? 이자를 보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평의원 박윤규 : 이자는 둘째치고라도...

의장 강명구 : 2011년 12월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법인이 사학연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등록금심의위원회하고 대학평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돈 내라하는 것이 아니고 못 내실 것 같으면 저희에게 와서 보고해달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지금 질문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 근거 문서가 없는데 3월 10일에 돈을 집행했다, 4월 10일에 돈을 집행했다, 이걸 회계처리가 다르거든요.

평의원 박윤규 :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회계적으로 법정부담금에서 법인이 부담할 돈이 있고 학교가 부담할 돈이 있는데 법인이 부담을 안 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했다는데 그게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평의원 강희진 : 갑자기 어쨌든 시간을 유예기간 비슷하게 주는 거라고 볼

< 간서명 란 >

의 장

 21

수 있죠. 나중에 보전을 하든가 보전을 만약 못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경영개선을 해서...

평의원 박윤규 : 이제는 그게 안 되나요?

평의원 강희진 : 지금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데...

평의원 박윤규 : 사실은 편법도 법이라고, 편법도 법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세금을 운영해나갈 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세금 적게 나오도록 덜 쓰고 한다고 보면, 법인에서는 법인 돈으로 보고, 물론 크게 보면 한 옷의 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 주머니 돈 다르고 이쪽 주머니 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 분들에게 그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소용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자꾸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권한 내놓으라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응할 것이냐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 것은 4월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평의원 이순일 : 아직도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게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에서 본교 21억이 있는데 이것을 법인에서 부담안하고 교비에서 나갔다는 건가요?

평의원 이순일 : 그렇죠. 매달 교비에서 낸 겁니다.

평의원 강희진 : 지금도 계속 법인부담금액을 이미 교비로 다 나갔고 아직 보전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2월 28일까지는 주겠다고 하는데 문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평의원 강희진 : 여기 작성하신 것을 봐서는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2012년도에는...

평의원 이순일 : 입금일에 2013년 2월중이라고 되어있는 게 아직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다음 달에 한 번 더 두고 봐야죠.

의장 강명구 : 그럴 경우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저희가 대학평의원회에서 법

< 간서명 란 >

의

장  22 -

을 지키라고 하는 임무를 잘 못 지키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미루어졌는데 지금 처장님께서 중간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이신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문서로 못 주시면 당연히 법원에서 한분이 나오셔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성의라도 보여주셔야지요. 바로 옆에 계시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야 평의회도 무슨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라 하니까... 공조직에서 행정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부담 못할 경우에는 등심위와 평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돈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두 가지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이 자금을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집행할 근거라는 것이...

평의원 김진우 : 사학연금을 납부해야할 근거가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강희진 : 박윤규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의 말씀이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을 지출하는 근거 없이 법적인 합법성 없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거든요.

평의원 김진우 : 왜냐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내야하고...

평의원 강희진 : 만에 하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다면...

기획처장 김민구 :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야하고 못 낼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교비로 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 되는 것은 아니죠.

평의원 이순일 : 아닙니다. 개정되었으니 위법이죠. 내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학교가 교비로 내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한다?

< 간서명란 >

의 장

 23 -

평의원 이순일 :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 개정입니다. 제가 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사학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학연금 만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개선계획서를 평의원회와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교과부에 제출해야하는데요. 법인에서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사학연금을 100% 부담할것이라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평의원 강희진 : 부담하겠다? 사후에 보전하겠다?

예산팀장 조정숙 : 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그것을 하여간 문서로라도 주셔야죠.

예산팀장 조정숙 : 문서로 안 왔다는 것을 문제삼기가...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다만 기획처에 전화 한 통으로 '넌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 자문제는 논외로 친다해도. . 지나칩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학평의원회에서 만약에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시켜서 자문하게 되면 걱정되는 게 우리가 법을 잘못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2011학년도에 2월분을 본교가 부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를 보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팀장 조정숙 : 이 표에서는 매 월마다 얼마얼마 이것을 말씀 안 드렸고요. 총 9억5천5백만원을 부담을 했다고 표를 드렸습니다. 2011학년도에 9억5천5백만원을 부담했다는 것은 사학연금법이 개정이 된 2012년도 2월... 2월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2012년도 2월 그러니까 2011학년도 마지막 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6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1억6천8백만원이라는 숫자는 9억5천5백만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2년 전에는 실제로 마지막 추경에서 줄어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

< 간서명란 >

의장

 24

을 그대로 있는 대로만 기록하거나 구두로라도 보고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자문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이전에 법정부담금이 꼭 지원되어야 한다’ 라고 자문을 해주시면... 추경(안)도 역시 이사회를 가야하거든요. 이사회를 통과하면 사실은 주겠다고 통과 하신거니까 그게 자문인건데... 그거 믿을 수 없으니 자문을 못해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법인에서 2월에 돈을 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바뀐 적은 있지만 대부분 다 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을 안 하고 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때는 저희로서는 여기서 자문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더 걱정인 것은 저희가 자문을 하는데 자문 결과가 ‘몹시 부적절한 예산 편성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의장 강명구 : 자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문이 어려워지는 거죠.

평의원 박윤규 : 2013학년도에는 23억원을 법인에서 내야하는 것이네요.

평의원 이순일 : 네

평의원 박윤규 : 그런데 법인은 수익이 있어요? 학교에서?

의장 강명구 : 정관에 보면 법인이 가진 수익자산이 있습니다. 몇 군데 부동산이 있고 아까 병원에서 예산 설명해주셨듯이 의료원을 통해서 이런 저런 형식으로 많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대학교가 예전에 김우중 회장 있을 적의 그때 상태라면 아마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고... 법인의 이사장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성대 같은 경우 삼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쉽게 나가고 하는데, 일 년에 23억을... 병원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계속 내야하는건지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이자까지 얘기 나오기엔 좀 벅찰 것이고... 지

< 간서명란 >

의 장

 25

나간 것을 너무 파헤치면 가뜩이나 현재 것도 머리 아픈데 더 머리 아플 것이고 2013년도 2월중 하겠다면 한번... 저희가 자문기구지 여기서 저분들에게 압력 가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법인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 남겨서 전해주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의대의 30억8천만원 이것도 병원에서 나온 돈입니다. 법인 부담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번 돈입니다. 24억도 병원에서 수익도 있고 다른 수익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무슨 곳감 꼬치 빼먹듯이 수익자산을 다 빼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전액은 아니라도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가능하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이게 항상 학생 등록금 문제에서 걸립니다. 학생들 등록금이 1% 올라가면 그게 7억입니다. 예를 들어 23억을 교비로 부담한다면 등록금이 그것 때문에 3%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구성원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왜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했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학평의회가 나서서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이 건에 대해서는 2월까지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2월까지 보고 그때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평의원 이순일 :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년에 경험한 게 있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 자문을 받으면 재정개선계획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이 회의를 완결 짓고 나면 더 이상 신의를 지킬 이유는 없어집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정개선계획서를 안 낸다고 할 때는 자동으로 법인에서 부담금을 내겠다고 통보가 된 거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 매달 10일에 내던 것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통과되는데 지금 재정개선계획서를 안 낸다고 하면 법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게 이 속에 들어있다 라고 본다면 다음 달에 봐서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13학년도에 매달 10일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학교에서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10일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는다 하면 법인에 이자

< 간서명 란 >

의 장

 26 -

애기를 덧붙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연체료 문다면 법인도 물어야죠.

평의원 윤갑희 :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면 이순일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 애기를 해야겠죠.

평의원 박윤규 : 이자는 이자지만 결론은 이게 정상으로 가는 방법이... 이자 더 낸다고 해서 뭐... 정상으로 갔으면 이자도 안내요.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에서 다달이 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평의원 박윤규 : 그래도 그 분들이 와서 애기를 해주든가 애기를 해준다면 그 방법 뿐이지 저분들은 애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틀림없이 2월 10일이 되면 처리가 될 거예요. 처리를 하시겠죠.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자꾸 양보를 해서 재단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나 문서 없이도 자문에 응했을 경우에 아까 이순일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날짜 상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재단이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 내겠다고 하고서는 재단에서 2월 말에 안낸다면 법규위반입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준다하고 주지 않았다, 재정개선계획서도 보내지 않았다 하면 저희도 할 수 없이 교과부에 문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저절로 신문에 나고 일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분도 안걸리는 바로 옆방에서 오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2월말까지 내겠습니다.' 한마디만 레코딩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 '돈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앞두고 재정개선계획서 내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그대로 통과된 다음에 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우리가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한다 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구를 잘 읽어보면 교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본예산을 만약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재정개선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3학년도 본예산의 내용은 그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액수는 법인이 부담하는

< 간서명 란 >

의 장

 27

것으로 최소한 예산상에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예산상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부속설명을 하신거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작년엔 교과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자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답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의장 강명구 :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교수님 저희가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나누어서 구분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올해 2013년 부터는... 세목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평의원 이순일 : 이재호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을 누가 부담한다는 것도 명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평의원 강희진 : 회계가 다르니까 구분되어 있겠죠.

예산팀장 조정숙 : 수입에 전입금으로 표기 되기때문에 지출은 교비에서 나가는거고 재원이 전입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전입금으로 해서 사학연금에 전입금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산팀장 조정숙 :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 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한테 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back자료상에서 수입과 지출 항목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의장 강명구 : 복잡하게 들어서 갈 필요 없이 와서 주겠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평의원 강희진 : 그것은 이미 떠난 얘기니까 현재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니까요.

평의원 이순일 : 학생 의원들은 혹시 등록금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거나 고민한 적이 있나요? 두 사람은 안 들어갔죠?

평의원 이홍평 : 네, 안들어갔습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28 -

평의원 임정민 : 제가 생각하는 방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납입대상이 원래는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우학원이 내야 하는 거잖아요. 고지를 수령하는 대상을 법인 사무처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받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회계가 구분되어 있어서요.

평의원 임정민 : 그게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없으니까 그렇죠.

평의원 임정민 :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아니라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평의원 임정민 : 학교로 오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죠. 당연하죠.

평의원 임정민 : 사용자가 아니라?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죠. 우리가 월급도 주고 다 하니까 우리가 내야하죠.

의장 강명구 :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제쳤고 저희가 오늘 회의는 6시까지 끝냈으면 했는데, 지금 추정도 들어가지 못했고 예산자문도 못했습니다. 한 2~3분 동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물겠습니다. 의견을 한 분씩 얘기하고 몇 분이 자문에 응하자 몇 분이 자문에 응하지 말자라는 것을 한번 표절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거부하거나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한다면 자문 내용에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아닌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예산편성하고 법인이 주겠다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물론 세상일이 관계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법인이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면 되거든요. 일부라도 교비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된다면 재정개선계획서를 내고 등심위하고 평의원회 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심의 받아서는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29 -

평의원 강희진 : 내겠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금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약 2월이 지나서 3월 이라면 왜 안했나 이게 되는데...

평의원 이재호 : 그렇게만 보기에 안타깝게도, 첫 번째 페이지에 2012년 2월 24일에 사학연금을 법인에서 부담한 액수가 있잖아요. 9억5천만원. 그런데 미묘하게도 법이 개정된 것은 1월이고 2월부터는 법인이 다 부담해라 만약 교비에서 부담했다면 나중에라도 그대로 보전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전했다고 기록을 남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해석이 거의 사사오입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무슨 해석이냐면 2월 24일에 준 9억5천은 말하자면 2월에 다 내야하는 액수 100%를 포함하고 나머지 11달의 경우는 전액이 아닌 액수를...

평의원 윤갑희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었나요?

평의원 이순일 : 그때는 2011년과 같은 식으로 매년 했습니다. 교비에서 더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정해진 게 없었고요?

평의원 이순일 : 한 번도 저희가 문서로 받은 적이 없어서 결산일 전까지는 얼마를 교비로 부담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러니까 교비에서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건가요?

평의원 강희진 : 대납하고 부담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저는 그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2012년도 이미 대납을 해왔단 얘기죠?

평의원 이순일 : 한 번도 분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다 대납입니다. 법에 보면 아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 윤갑희 : 개정 전에도 원칙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평의원 이순일 : 네,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법인이 내라고 개정 취지에도 쓰여 있고 법령에도 쓰여 있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2012년도 계속 교비에서 대납을 해왔고 지금 그것에 대해

< 간서명란 >

의 장

 30

서 전액을 2월까지 대납한 금액을 교비에 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그렇죠.

평의원 김진우 : 그거하고 2013년도 학년도하고...

평의원 윤갑희 :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후 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평의원 이순일 : 지금은 그것을 승인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때는 그런 부수적인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평의원 박윤규 :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만 알고 그 당사자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평의원 이순일 : 이 회의가 지나면 여기서 승인받은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승인을 못 말아도 통과하잖아요.

평의원 이순일 :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못하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그런데 저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해도 일을 집행했잖아요.

평의원 이순일 : 이 사항은 자문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평의원 강희진 :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승인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자문이고요?

평의원 이순일 : 승인인데, 저희가 예산을 자문하면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교과부가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평의원 이순일 : 제가 관계법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얘기를 들어봐주세요. 2011년도에 대해서도 2월분을 이렇게 했으니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교과부에서 '그거 안돼 너네 계획서를 자문 받아와' 라고 교과부가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이거 냈으니까 됐네' 라고 해주는 거지 여기서 자문했다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안

< 간서명 란 >

의 장


31

내 그러면 교과부는 당장 뭐라고 그럴거라는거죠. 여기서 자문한 게 승인한 건 아니고 자문하신거죠. 그게 승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과부는 그것을 승인한 걸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는 2월에 돈 냈나 안냈나를 보는 거예요. 다만 교과부는 선이자 는 생각하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과부에 선이자 미리미리 내게 해줘, 그러면 인정 안 한 것으로 법을 바꿔줘, 명확하게 해줘 라고 요청해서 교과부가 인정 못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부가 인정하거든요. 교과부가 회계법으로 어쨌든 회계연도 안 끝났는데 그때까지 내면 됐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과부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교과부에 압력을 넣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는 2월말에 내면 문제 없다고 할 거라는 거죠.

의장 강명구 : 처장님이나 저희나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면 자문을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법은 이순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구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2월말에 벌어질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조건을 붙여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조건부로 승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장 강명구 : 교과부에 조건은 안 들어가고 그냥 자문 받은 것만 들어가겠

평의원 이재호 :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긴 한데요. 그리고 아까 같은 해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문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실제로 2월에 들어오는지 보고 만약 그때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뭐랄까 실행행사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겠

의장 강명구 :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문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순일 교수님 지금 법을 띄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 내리신 다음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의견 주시고...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두 개의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나

< 간서명 란 >

의 장

 32 -

은 질문은 여기에 있는 이 주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작년의 경우, 예산 편성 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부담금에 학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예산(안)을 심의한 경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산(안) 자문만 하는 것인데, 예산(안) 자문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재정개선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자료로 사립대학제도과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가 ‘학교법인이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례 발생’입니다. 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은 학교회계 부실초래 및 대학등록금 인상요인’ 이게 법을 개정한 이유입니다.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런 추진경과가 있고요, 추진방향도 보시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예 법의 취지로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원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평의원 박윤규 :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서 하겠죠.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재정개선계획을 발표하면 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아니라 돈을 내는 거죠. 법정전입금 중에 사학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안 받을 경우에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받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매달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것을 연말에 주니 연말에 줘도 줬다고 그럴 것이냐 그것을 다 안 준 것으로 할 거냐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교과부가 문제없다고 한다는 거죠.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용시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2월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 반드시 소급하여 승인 신청, 2월분을 분명히 명시’ 해서 해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첫 번째 화면에 2012학년도 예산 편성시에... 그것은 교과부에서 자체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등심위, 평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어서 그 문구는 2012학년도 한 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재정개선계획서를 낸 것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2012학년도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평의원 이순일 : 이것은 매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문제가 생기면 올해도 신청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든지 아니면 돈을 줄 거라는 것을 명확히 문서로 약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는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문서로 약속하라는 것은 주장하시는 거지 교과부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문서로 내라 하는 것은 그런 의견을 여기서 얘기 하실 수 있는 것이구요.

평의원 이순일 :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단위로 승인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2012 회계연도에 승인 신청 시 2월분 포함하여 신청하고 2월분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기부담 하였다 라도 해당 금액을 2012 회계연도에 학교법인에서 보전(2월분 보전임을 자금 용도로 명시).’ 그래서 2011학년도 부담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대로라면, 등분해서 낸 것이라면 당연히 보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꾸 편의적인 해석을 할 거라면 오해가 없게 2012년, 2013년은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문서로 약속하시라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2012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법인 부담금의 학교부담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의한 경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좌우

< 간서명란 >

의 장

 34

시간 예산심의 받았으면 끝난거다 라고...

예산팀장 조정숙 : 교과부에서 전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문건을 내렸다고 교과부와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을 다 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재정개선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비회계에서는 전입금이 있고요, 법인회계에서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똑같아야 하거든요.

평의원 이순일 :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것을 문서로만 약속하면 됩니다. 이 건 본예산이니까 추경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똑같이 제출을 교과부에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본예산이니까 추경에서는 변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약속이라는게 평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교과부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여기 보시면 대학평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심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없는데 심의할 수 있느냐... 지금 예산편성은 본예산이 되어있는데 추경 때 나중에 액수가 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럴 거라는 것을 문서로 주셔야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짱아요. 여기서는 문서로 내라 라고 평의회에서는 얘기하시는데..

의장 강명구 :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평의원 이재호 : 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라는 상황을 상정 해보면, 그 때도 선이자 부분이 남지만 그것은 차후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칼자루를 잡는 것은 우리 쪽이죠. 재단이 이런 상황인데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재정개선계획서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의장 강명구 : 있겠죠. 논리상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 그런 상황을 재단은 원치 않을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써서 부담을 줄이면서 이행할 가능성이

< 간서명 란 >

의 장



26 -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제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에 한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교과부 관료들은 항상 모든 것을 원칙대로 잘 할 것이다.” 라는 가정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상 교과부 관료들이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가정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제호 : 근데 이게 예방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의원 윤갑희 :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 내는 부담금을 작년에는 2월 24일에 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추경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시차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의원 이순일 : 그렇죠.

평의원 윤갑희 : 마지막 추경 전에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평의원 이순일 :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평의원 이순일 : 그 정도만 배려를 해주시면...

평의원 강희진 :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법정부담금이 3장인데 우선 2011년도 것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법인에서 2012년 2월 24일에 9억을 부담한 것에 2012년 2월 달 분인 1억6천8백이 포함되어있다고 이미 얘기했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 Pass... 두 번째는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교비가 이미 21억을 대납을 했는데 아직 2월 중에 납부하겠다고 했으니 아직 2월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하면서 전제조건에 2월에 이것이 납부되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끝내고 2013년도는 이미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 차후에 그 예산대로 가는지 추후에 확인하고 더불어 2013년도에는 교비가 매월 대납하고 있을 것을 늘 2월 달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계속 교과부 얘기나 법인에 대한 경험적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끼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 간서명 란 >

의 장

 - 36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먼저 기획처에 여쭙보겠습니다. 2011년에도 2월에 납부를 하셨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2월 24일에 9억 5천을 받았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2011년에는 어땠습니까? 2010학년도...

기획처장 김민구 : 똑같이 받았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는데 납부일정을 지켜줬네요.

기획처장 김민구 : 대체적으로 그 기간 내에 지금까지 줬지요.

평의원 김진우 : 법인을 많이 이해해준다고 하면 과거에는 분담금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일부지만 그 날짜는 지켜서 납부를 해줬다. 그럼 이번에는 분담금 100%를 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으니 날짜도 지킬 것이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페이지의 밑에 줄에 있는 법인분담금의 학교 부담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이거든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학교가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 하더라도 재정계획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강희진 : 아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지만 세입에 법인에서 전입하겠다고 되어있으니까...

평의원 김진우 : 거꾸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하고 안하고는...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실 예산에는 있다는 거죠. 실 예산에는 더 자세한 것에는 그게 다 있을 거라는 거죠.

평의원 김진우 : 거기에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만 없으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총액이 있는데 법정부담금 전입 액은 총액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예산 편성할 때 교비부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맞출 수 없는데...

평의원 박윤규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월 중에 납부하겠다는 것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겁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 37 -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에서 얘기한 거죠.

평의원 박윤규 : 법인에서 말씀하신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계속...

평의원 박윤규 : 일단 그렇게 믿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저희가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한 번 더 여쭙보시고 녹음해 두시죠.

평의원 강희진 :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2월말에 돈이 납부되는 대로 바로 평의원들에게 이미 다 이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려드릴게요.

평의원 박윤규 : 저희들이야 외부사람이지만 학교에 계신 분들은 서로 잘 지내셔야 되는데 너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분이 법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나. 거기에 대해서 보장도 좀 해주시고 서로가 그래야 학교에서 분위기가 원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누가 타자치는 사람이 2월 정도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법인에서 어떤 분이 답을 주신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느낄 때 자문은 이런 수순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의구심이랄까 신뢰를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교비에서 대납하지 않게 다달이 내주십사 또 개선 계획 같은 것이 없더라도 그게 어려우면 마지막 추경 이전에는 제발 넣어서 신뢰를 회복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기록 남겨놓으셨죠? 매달 법인에서 사학연금 납부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2차 추경 전까지 법정전입금을 꼭 내주십시오.

평의원 윤성승 : 납부가 완료가 되면 기획팀에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물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겨주시면...

의장 강명구 :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총장님께 드릴 적에 법정전입금 문제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논란이 되는데 법인에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모

< 간서명 란 >

의 장

 38 -

든 분들 에너지 합한 것이 법인 한마디만도 못 한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러한 조건 안에서 자문에 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틀리면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 윤성승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7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 보시면 리스트를 나열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5번째를 보면 규정류 관리 개선방안 등 정책연구비 2천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규정류 위원들에서 연초에는 어떤 정책 연구비를 지급하시는 것인지 받으시는 위원들은 몇 분이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간사 김승권 : 이는 우리학교 규정 중 상위법과 하위법에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학교가 신규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은 정태용 교수님과 박사과정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학교 각종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위원으로서 봉사하고 업적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인정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규정 부분을 특별히 정책연구비까지 지급해가면서...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건 아니고요. 정책연구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관한 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점수가 안 올라가고 보수가 안 지급되는 봉사는 봉사 점수가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비는 인건비가 얼마로 제한되어서 거의 모든 정책연구비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러면 정책연구비를 받으신 분들은 연말에 봉사, 업적 평가할 때는 점수를 받지 않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돈을 받은 경우는 업적에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봉사 점수가 되겠죠. 정책연구를 한 것으로 봉사를 받지는 않죠.

평의원 윤성승 : 그러면 이것은 단독으로 하신건가요?

간사 김승권 : 이것은 규정류조정위원회와 별개로 하는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저는 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간사 김승권 : 이것은 따로 진행하는 겁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39 -

평의원 윤성승 : 그러면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거와 다르죠. 그것은 extra연구죠.

평의원 윤성승 : extra연구니까 봉사점수도 1점 받고 이것도...

기획처장 김민구 : 위원회의 활동은 봉사점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연구죠. 다른거죠. 위원들이 연구를 하지는 않죠.

간사 김승권 : 같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근데 우연히 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 아닌가요? 정태용 교수는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간사 김승권 : 규정류조정위원회에서는 규정류 개정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정책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규정류와 같이 그분이 그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어떻게 보면 이중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어서...

의장 강명구 : 지금 저희가 3시에 시작했는데 6시30분입니다. 난상토론 끝에 조건을 달아서 2012년도 2차 추경 자문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제가 대학발전과 관련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28억 정도 됩니다. 아주대학교가 수입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학교 발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겁니다. 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학원관련해서 수입 감소가 거의 28억 정도 됩니다. 특수대학원에서 19억 정도가 되고 일반대학원에서 7억7천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등록인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감소되면 연구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특수대학원 관련해서는 대학평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교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수대학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학원장 정도 되는 분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분석도 하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특수대학원장의 경우에도 독립운영부서니까 수입이 줄면 적립금이 줄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28억이면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의 액수에 해당합니다. 추경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정도 심각한 사항이면 대학원장 혹은 특수대학원장들이 사태를 분석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첨부되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처장님께서라도 혹시 대학원장이라든가 각각의 특수대학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신 바가 있는지...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실 건지... 아까 저희가 규정류 심의 할 때 나왔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그냥 특수대학원 정원을 줄어버립니다. 설명하실 때는 정원을 못 채우면 나중에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어떻게든지 예전수준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기획처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명구 : 아울러 유사한 질문이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특수대학원 중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많은 특수대학원들은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특수대학원으로 승낙 받고서 전임교원을 많이 모셨습니다. 제가 학장 할 때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아무래도 대학 제정 확충 위한 것이니 특수대학원 교원 채용 문제는 전임이 아니라 성과급 개념으로 해결해 달라. 전임교원을 뽑으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 고등 학교 교원 충원계획에 변경 있어서 아주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원 수급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상 문제가 생겨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예측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수대학원이라는 시장이 저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00억 정도 규모이고 종합관에 4층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의 수입원이 이미 saturation되어서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일 많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왜

< 간서명 란 >

의 장

 41 -

그러나하면 요즘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주로 원격 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학교가 평판도나 이런 것을 사이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경영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건잡을 수 없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어야 할지 원장님과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라는 부분이 사실 경영대학원은 심각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격대학이나 이런 것들로 가야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cover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반대학원도 지금 학력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상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propagation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학원장도 그렇고 끝없이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뾰족한 수를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고요. 기획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패러다임을... 지금 등록금 얘기하셨지만 당선인이 반값등록금 얘기하지만 학교 재정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학교가 수익사업구조를 가져가야됩니다. 근데 기존에 학교가 회사처럼 돈 버는 곳도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어학원하고 평생교육원 쪽에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은 기존에 교수님들이 그게 대학이 할 일이나 이런 얘기도 많으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학교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야될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평의원 강희진 :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하나 싶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특수대학원에 대한 학교만의 특성을 살린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전혀 저는 포인트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서울대나 이런 곳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인터넷으로 학습할거 왜 아주대로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 개업해서 돌아다닐 때마다 화성에 가서 일을 하고 오산에 가서 일하면 제가 아주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고향얘기를 하잖아요. 저 아주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원

< 간서명 란 >

의 장



나오신 분들이 동기처럼 반가워하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학부 졸업생만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경영대학원 나왔다 어떤 교수님 아냐고 너무 반가워하세요. 이 사람 왜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의 인간적인 끈끈함이 거의 마피아 수준이더라고요.

평의원 김민구 :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학교 경영대학원이 다른 특수대학원에 비해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3중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서 여기까지 와있고요. 그런데 교육의 상당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도 하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우리학교와 저희... 분란 때문에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깎아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교육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해도 중요한 노하우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끈끈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는 이유가 그런 고객을 많이 잃어서 평판도가 나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장의 트렌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도 원격교육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미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들은 사실 우리가 원격대학으로 인가를 못 받았지만 저희가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으로 평판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 수요가 석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정보통신대학원은 이미 거기는 군인들 수요인데 거기도 이미 리소스를 다 써먹었어요. 더 이상의 새로운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고민하고 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환경의 변화는 다른 대학의 특수대학원도 똑같이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 나름대로 겪고 있는 내재적 갈등과 폐쇄성 때문에 더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내부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거 아시잖아요.

평의원 강희진 : 사실 이 얘기도 안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부갈등 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조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4년 사이에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활동하시던 분이 배제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다 알고계시군요

기획처장 김민구 : 공백이 몇 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운 원장이 들어가서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특수대학원은 다 같이 걱정하는 문제인데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복잡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도 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수입이 감소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입금 기부금 항목입니다. 4번째 항목을 보시면 기부금 수입이 7억7천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번년도 본예산에는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 인력 3명을 신규 충원하여 기부금수입을 11억7천8백만 원으로 작년대비 41.4%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기부금 수입이 7억7천만 원 줄어든 겁니다. 전문 인력을 충원 못했다는 말씀인데, 의욕적으로 전문 인력 3명을 충원해서 기부금을 11억7천8백만 원 더 받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7억7천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자가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과 집행에서 생기는 괴리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의원 김민구 : 인정하고요. 사실 예산 짤 때 과도하게... 기부금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학교가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1-1-1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경대원이나 아까 동문들 얘기하셨는데 동문회나 또 경대원 동문들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이 심심치 않게 1억 이상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처럼 한두 해에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 간서명 란 >

의 장



것들은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아진 것으로 보고요.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잘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라든가 선진 대학들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좋아지고는 있어요. 많이 도와 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처장께서 애쓰시는데 싫은 소리 하기는 싫지만, 노력했는데 안됐다는 답을 듣기에는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타격이 큼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임대보증금 수입도 예상보다 7억1천5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계획에 의하면 6개 층을 층당 대략 3억3천만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임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학교가 임대 직접 나서서 될지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억1천만 원이 비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공기의 좌석과 같습니다. 한번 떠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올해 임대 못했으면 그 임대 수입은 사라지는 거지, 내년에 임대 잘한다고 채워지는 수입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만, 수입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몇 건이 반복되는 것을 봐서는, 회계연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수입 예산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조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사실은 임대는 총무에서하고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수입이 많아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학교가 펀드문제도 깨지고 하지만 재무도 아니고 경리팀이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사회가 바뀌어서 자금관리라든가 회사처럼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옛날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학교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이 양반들은 사실 학교를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그것처럼 이것도 사업팀이 저희학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이거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게 자기 거라면 또 몰라도 다른 일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도 사업팀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냐 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 쪼아도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잘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어려움이 있

< 간서명 란 >

의 장



45 -

어요. 담당 전문가가 하나 필요... 학교도 밥만 먹으면 돈 버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거꾸로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홍보전문가 채용 때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홍보전문가였으면 안 벌어질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부 전문가도, 과연 예상처럼 기부금이 늘지... 그것도 방안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인력채용은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평의원 김민구 : 인력채용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저희한테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교학직군을 만들면서 교학직군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일반직군 사람들을 뽑아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인데 인력을 막 늘려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부 전문가나 이런 것도 보수적으로 가야지 막 뽑아놨다가 나중에... 이것들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어쨌든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직군.. 그런 식으로 치자면 누구든지 사람 채용해서 쓰면 되는데 저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후배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논문도 써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동시에 학교일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리소스를 끄집어내서 대체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유사한 문제인데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있는 그런 부서도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의 컨트롤 타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회의록 고철 적에 시간이 너무 걸려 안하려고 했는데...

평의원 이재호 : 아주 간단한 거 하나... 11페이지에 집기비품 주요 증(감)요인에 연구지표분석시스템 개발사업 이런 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연구지표분석시스템 개발사업 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 간서명 란 >

의 장



46 -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정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수동으로 엑셀 표를 만들어서 DB에서 일부 자료만 받아서 엑셀로 분석하고 있어요.

간사 김승권 :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시스템인데요. 작년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엑셀로 자료를 받으면 저희는 엑셀로 프로그램을 짜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나올까 말까 한데 최근에는 정보공시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발달이 되었다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데모프로그램을 봤는데 엑셀을 자료를 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경영분석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 전산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욕심에 작년에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전산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도입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일 년 늦추더라도 좀 제대로 도입하자고 하여서 늦춘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항목의 이름이 잘못된 건가요? 집기비품이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예산 항목이 없고... 해당 항목인데 이름에서 빼놓은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집기비품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른 학교보다 우리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세목 구별이 의아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급수수료에 이사 철거비용이 들어 있다든가 이런 거...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급수수료가 용역을 받고 지급을 하는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용역비냐 지급수수료냐. 기업회계에서는 지급수수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학교회계도 딱히 이게 지급수수료다 용역비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비로 카운트 안하고 지급수수료로 해왔는데 저희도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았거든요. 약간 특별한 케이스예요. 변호사 자문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명쾌한데... 그래서 회계사님도 지급수수료도 괜찮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라고 해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공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인데 공사비에 도로 개설비가 포함되고, 공사와 관계없는 건물 철거비가

< 간서명 란 >

의 장



47 -

들어가는 이런 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사는 여기 공사인데, 다른 곳의 비용이 포함된 소위 말하는 끼워 넣기 식의 회계처리입니다. 무슨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이는 연관성이 없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한번 미리 스크린 했습니다. 자료도 추가로 받아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기도 하고 신뢰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육외비용 중에서 보면 몇 년째 반복되어 나타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가 소송 때문에 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학원 관련도 있었고 교수님들 관련도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외부수탁과제 소송에 따른 잡손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학당 관련한 소송에서 학교가 저서 부담하는 비용이 귀책사유가 100% 학교에 있는 건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하셔야 될 일이지만, 반면 우리 학교에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10년에 하나 있는 건이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거의 매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있는 외부수탁 과제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외부회사 과제였는데 회사에서 연구비 준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원래 9천하고 6천이었는데 9천은 이겼는데 6천은 진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진데 처음 나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탁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예비비를 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케이스는 새로운 것이고... 그 외에도 보면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하는 것 중에 이전 등록금 반환하는 거라든가 사업비 미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잡손실중에 의과대학에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잡손실이 아닌데 그것을 잡손실로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 간서명 란 >

의 장



2013년부터는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그 금액 22억중에 13억은 정확하게 잡손실로 볼 수 없는 계정으로 쓰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평의원 이재호 : 계정과목 변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처장 김민구 : 편성 문제입니다. 22억중에 13억은 그런 것이고 잡손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수훈 전임총장에 대한 건은 우리가 쳐서 1억7천정도이고 홍만표 교수의 지급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케이스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이유입니다. 잡손실이 액수가 22억이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케이스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의장 강명구 :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랬으면 줄일 수 있었을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학교의 명예도 있고 이익의 거래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고려를 차분하게 해주시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수훈 교수 1억7천은 2년 치 급여 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네. 2년 치입니다.

의장 강명구 : 2차 추경 질문 있으십니까?

평의원 임정민 :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7번은 저번에 설명 들어서 묻지 않으려고 하고요. 6번에 대해서는 기획처에서 먼저 교원들을 배려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교원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복지카드는 임단협 하면서 생긴 사항이고요. 우리가 계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절충으로 복지카드를 인당 40만원을 추가 결정해서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협상과정 발생한 것이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시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장 강명구 : 또 있으십니까? 어렵게 2차 추경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큰 건이 남아있습니다. 2013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

< 간서명란 >

의장

 49 -

(안)인데 다들 읽어보고 오셨나요? 가장 큰 특징만 보고 부탁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이 2013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 2013학년도 본예산 더 중요한 안건인데 다들 지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명을 짧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교수 몇 사람은 자세히 공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아까 1차로 스크린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짚어주시죠.

평의원 임정민 :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40주년인데 행사비가 줄어도 무리가 없이 진행되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도 인하하고 반대로 인건비는 올렸고 그랬기 때문에 행사비를 1억9천정도 경감이 된 겁니다. 가능하면 행사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경상비의 상당부분을 감소 했어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회의비는 줄어들지 않고...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동결이 된 거고요. 기타운영비는 국고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서운영비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네

평의원 임정민 : 40주년이면 학교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이런 행사가 많이 줄어들면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 보면 연구비 항목에서 2013년도에는 자연계열도 2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인문계열 올해에 먼저 시행하고 자연계열은 2013학년도에 시행하는 연구지원...

예산팀장 조정숙 : 교내연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임정민 : 네

예산팀장 조정숙 : 그것은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50 -

기획처장 김민구 : 줄어서 그렇죠? 포함됩니다.

평의원 임정민 : 네

의장 강명구 : 아까 저희가 스크린 할 때 질문 드린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연구 과제를 따오면 산학협력단에서 카드를 줍니다. 법인카드를 받아서 항목에 맞게 집행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장점은 본인들이 업무는 늘어나지만 책임감도 생기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학생회 같은 케이스도 1년 예산할 때 학생회 경비가 얼마나 학생회 경비를 분기별로 카드를 쥐서 사용하게 하고 증빙서류 갖추게 하면 행정업무도 줄어들고 훨씬 일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학생회건 각 부서건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면 훨씬 간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른 학교나 회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게 하면 많이 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카드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투명성이나 이런... 물론 학교 본부나 이런 데는 카드를 쓰게 되어있어요. 학생들도 대부분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 학생들한테 카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봐서 그게 더 좋겠다하면...

의장 강명구 : 학생회는 굉장히 열심히 예산도 공개하고,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 짜고, 대학 평의원회가 그런 노력들을 승인하게 되면 자율적 집행 능력이 늘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의 일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검증하기 쉽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14페이지에 보면 연구팀 교내연구용 기계구입 감소 1억1천9백만 원이 있습니다. 처장께서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BK사업들이 올해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가 매칭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처장 김민구 : 이것은 우리가... 연구팀 교내 연구용 기계구입 1억1천9백만 원이 감소된 것 말씀이지요?

평의원 이순일 : 예상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기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 간서명란 >

의장



예산팀장 조정숙 : 산단 전입금으로 연구과제도 하면서 경비도 쓰면서 기자재 사고 하물며 집기도 사는데요 전체사업비가 일부분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하면 산학회계의 처리규칙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일반성과급도 지급해야 되고 이래서 전체적인 산단 전입금은 줄어들면서 각종 연구비도 줄고 기기도 줄고 집기 줄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신임교수님들에게 드리는 연구비라든지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할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산단 전입금 재원 수입 감소에 따른 감소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가뜩이나 수입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FAIR하냐 아니냐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의과대학생은 유급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유급이 되면 일부과목만 수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등록금은 전액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산팀장 조정숙 : 초과학기 말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는 사실 반대로...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졸업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는 늘어나고 지표는 나빠지고 이 친구들이 학점 등록이나 학점유지비만 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점등록만 하기 때문에 학점 당 가격이 싸집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정규학기에도 학점등록을 합니까?

평의원 임정민 : 아니요.

기획처장 김민구 : 계절 학기에도 그렇고 정규학기는 아니고...

기획팀 이수영 : 정규학기를 끝내고 나서 초과 학기에...

평의원 이재호 : 초과 학기에 등록을 유지하는 의미가...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을 유지해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급제도가 없어서...

평의원 이재호 : 의대의 유급제도는 다릅니다. 중간에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학교에는 그런 경우에 학점을 5학점, 3학점만 듣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럼 학점 당 얼마를 받아요?

평의원 이재호 : 전체 등록금을 다 내죠.

< 간서명 란 >

의


- 52 -

기획처장 김민구 : 전체를 다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팀장 조정숙 : 유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기획처장 김민구 : 의대만 그런 거죠. 저희는 안 그러죠.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의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법전원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법전원도 그렇죠.

의장 강명구 : 메디컬스쿨과 로스쿨이 그런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굉장히 unfair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는 저음 드는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정규 학기 때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학칙이 없기 때문에...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한 학기를 정규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평의원 임정민 : 일반학기는 그렇죠.

기획처장 김민구 : 일반학기는... 그것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학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평의원 임정민 : 네. 1/6, 1/3 그렇게 해서...

기획처장 김민구 : 몇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학부는 유급제도는 없는 거죠?

평의원 임정민 : 학사경고는 있고 유급은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유급이라는 말은 없죠.

평의원 이순일 : 전공진입제가 생겼으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있을 수도 있죠.

평의원 이강준 :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3% 인상에 승진, 승격, 승급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안 된 겁니다. 별도입니다. 3%는 순증입니다. 승진, 승급은 대충 1.5~1.7%정도 될 건데 별도입니다. 다 합쳐서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평의원 이강준 : 하나만 더...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기 계약직을 연구하신지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처장 김민구 :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조교 선생님들이 2년

< 간서명 란 >

의 장



마다 나가는 문제 때문에 교학직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행정지원직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규직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일반 정규직으로 유지를 하되 조교수를 줄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과거에는 저희 기획처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총무의 일입니다. 총무가 주관이 되어서 TF를 해서 TF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제가 그 말씀 들은 것이 3년 정도 경과가 되었어요.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3년 더 되었습니다. 한 6년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제가 들은 건 한 3년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물론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과 2011년에 감사를 한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교를 7번을 바꿨더라고요. 그니까 이것은 교육이외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교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드가 많은 데가 특수대학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전혀 특수대학원의 상황들이 전혀 상상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는데 3년째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이번에 4월에 뽑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기획처장 할 때부터 주장을 했으니까 6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실은 연구도 많이 했고 했는데 반대로 총무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한번 잘못되면 굉장히 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6~7년 지나간 겁니다. 이번에는 총무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기획에서 주장해서 무산됐던 것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체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산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직군이라고 한다면 임용기간을 늘리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산단은 연구 관리직이라는 정규직 1명을 뽑았고 올해 또 뽑을 겁니다. 근데 학교는 똑같은 교학직군으로 정규직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법규를 고쳐야 되거든요.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

< 간서명란 >

의 장

 54 -

을 고쳐야 되어서 지금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고 했으니까 환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시키다 보면 손발들이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정말로 새로 교육하는 cost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작 중요한 2013학년도 본예산은 기운이 빠져서... 질문 더 하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결산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고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밖으로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일어났지만 안으로는 서로 이렇게 전제와 긍정 속에서 단단하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기획처장, 예산팀장 퇴장)

의장 강명구 : (펀드 불법 투자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하다.) 교수회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생은 무지하게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꼬일 것 같아서 일단 평행선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더 이상 무슨 추가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경기도경에서 와서 벌써 본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를 우선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부에서는 어떤 힘들을 어떻게 모아야지 학교의 명예를 덜 실추시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고려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큰 틀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총장님을 뵈었습니다. 뵈고서 우리학교가 썩잖은 학교인데 뭐가 문제인가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2분법적으로 보지말자. 교수회도 그렇고 대학평의원회도 그렇게 하겠다. 현실을 직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 본부에서도 우리가 하는 요구들이 적법한

< 간서명 란 >

의 장



85 -

것이라면 너무나 이것을 꼬투리 잡는 걸로 가지마시고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정보공개도 빨리 해주시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합시다.” 라고 제가 총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서 최대한 여파를 줄일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순일 교수님 덧붙일 의견 있으십니까?

평의원 이순일 : 없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이런 모든 일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다. 이런 것이 왜 밖으로 나가는지 거기에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예우가 좋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학교에 상당히 비밀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것은 내부에서 나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강명구 : 그 문제는 벌써 저희가 4시간 겪는 와중에 무수히 반복해 논의했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얘기했고 그다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바가 틀리지 않다면 내부고발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과보고회의 요약본들이 나가서 신문에 보고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경찰 수사 정보과의 망에 걸려들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개혁의 문제라든가 정권교체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일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드린 말씀도 그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직시하자.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막고...

평의원 강희진 :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지수사가 되어서 검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조사를 해서 조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 본인들이 고소를 하든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의장 강명구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감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경찰이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경찰에

< 간서명란 >

의장

 -56-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면 SBS 보도가 나는 주에 저는 유럽 출장을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보지 못했고 기자가 저를 찾아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기 훨씬 전에 경기도경의 수사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학교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입장을 정하시면 아주대학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학교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고인 진술을 위한 소환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수사담당자에게 이게 고소고발사건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정확하게 인지 수사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인지수사이고, 지시를 받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보다 먼저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8시간 정도 조사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가서 4시간30분가량 진술을 했습니다. 직원 중에 한분은 이를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고, 그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문건을 갖고 가서 고소 고발한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김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게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해서 수습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터져버려서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그렇게 수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에 아예 이렇게 터져버려서 저는 오히려 저쪽에서 무슨 확인이 되면... 누구의 부정이든 시스템상의 문제이든 설마 시스템상의 문제로 아주대학교 법인을 고소하거나 이러기는 힘드니까 부실하다. 이렇게 끝날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김진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내부적으로 수습이 되고 있는 단계에 다만 어떤 식의 인지든 뭐가 되었든간에 인지는 하늘의 계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소스를 줬을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헛소리를 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렸든 누군가는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 간서명 란 >

의 장



대한 지적인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 인지 수사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법원관계자인지 검찰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부적인 노력... 이미 감사도 받았고 감사보고서도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인지수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가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마무리하려는데 왜 그러느냐...

평의원 강희진 : 아니 뒷북을 쳐도 유분수지...

평의원 박윤규 : 우리는 교직원은 아니지만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급여를 받고 살아가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여기서 밥 먹으면서 이 밥상 나쁘다면 나쁜 거지...

평의원 강희진 :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저희 가족한테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했더니 검찰수사하고 난리가 났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거 이미 수습단계인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비리가 있어서 난리가 난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니까...

평의원 이순일 : 나올 때 수사담당자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해서 '아주대는 자체에서 이걸 정리하고 있다, 절대 언론에 흘리지 말라,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담당자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SBS기자는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는데, 당부하는 얘기는 충분히 전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든 경찰이든 누구든지 내부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흘렸다면 그거는 어느 구성이든지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큰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잖아...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 뺨 때릴 수 없자나요. 크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평의원 이순일 : 그 입장은 저희가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이흥평 :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었고 항상 입시철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조금 냉정해져야 합니다. 마녀사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도 많은 소문이 떠도는데... 이를테면 진상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제출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때 보니 수사담당자가 나름의 자료와 표는 가지고 있지만, 조사보고서를 꺼내 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저는 그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액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께서 너무 우리 편드는 것은 반대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이 되고 누군가의 부정이 있으면 고소도 하고 해야 깨끗해지는데 저는 그거죠. 다 정리되는 이 상황에 하필이면 입시철에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습단계에 들어간 이 상황에 이것은 정말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악의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에요.

평의원 이순일 :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평의원 강희진 :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푹푹 뭉쳐서 잘 수습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인지수사이니까 넘어가자고 얘기할 수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파장이예요.

평의원 박윤규 : 그 사람을 잡는 것을...

평의원 강희진 : 잡기보다도...

의장 강명구 :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핵심 중 하나였는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가지고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죄송합니다. 딱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잡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그 사람을 제외한 전 구성원이 차라리 누구라고 밝혀지는 것보다 전 구성원이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inform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뿐더러 밝혀지는 것도 쉽지 않고 어차피 밝혀지고 난 다음에 후수습도 안 돼요. 어떤 루트로든 어떤 관계로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처럼 저는 굉장히 그런 표현 못하겠는데 정확한 표현일수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 것은 자정이 아니다 그 의도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거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몇 년

< 간서명 란 >

의 장



동안의 노력을 그렇게 날려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절대 학교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확하게 inform을 해줘야 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지금 뜨거운 사람 딱 네 명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선배님 두 분과 저희 학생 두 명입니다. 이거 많이 공감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뉴스 봤을 때 정말 피눈물 흘렸거든요.

평의원 이홍평 :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교직원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학생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는 동의 안합니다. 저도 명예를 아주대학교에 걸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고...

평의원 강희진 : 맞아요. 전체가 졸업생도 마찬가지고...

평의원 박윤규 :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은 인지를 안 합니다.

평의원 강희진 :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루트로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inform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은 대충 알 텐데 뭐... 그거에 대해서...

평의원 김진우 :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99% 누구라도 절대로...

평의원 강희진 : 누구라고 밝히려는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의원 박윤규 : 제 얘기는요. 누구라고 손가락질은 못하지만 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서로 못할 거라는 얘기죠.

평의원 이순일 :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파리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추측들을 하는데 마녀사냥들을 하세요. 확인이 불가능한 일을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평의원 윤성승 : 인지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누가 단서를 제공해서 할 수도 있고 기획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평의원 강희진 :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적어도 이런 consensus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99%의 가능성이 있는

< 간서명 란 >

의 장



- 60 -

어떤 분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내부적인 자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게끔 그 정도의 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의원 이순일 :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총장님과 몇몇 보직자들과 4시간씩 논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17일로 경찰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때까지 두 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펀드 문제를 마무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에서 마무리를 안 해서, 또 일이 불거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펀드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뉘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실행을 하려면 교수님들끼리 회의해서 야 이거 누구냐. 우리가 알아보자. 교수님끼리 그렇게 하고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성토를 해야 되...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흥분해버리면 누구하나... 학생들 옛날에 구호 많이 보셨잖아요. 학교를 굉장히 깎아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씨 불일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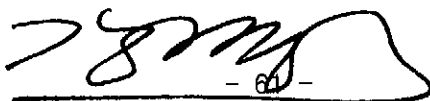
평의원 윤갑희 : 저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깐 방관자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학생, 동문선배님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만 말씀을 했는데 이 자리 참석한... 사실은 아까 그 부류에 못 드는 저지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너무 놀랐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다했냐면 검찰,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어떻게 아주대가 총력을 기울여서 방송에는 안 나오게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입시철 학생들 항상 그럴 때인데...

평의원 이순일 : 사실은 아까 홍보전문가 얘기한 게, 화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대처하라고 뽑은 건데 거꾸로 그 양반이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평의원 윤갑희 : 그걸 막아 줘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질적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학내 소통문제가 아니었을까. 보고서 나온 지가 두 달 더 되었던 말이죠. 그러면 본부 측 하고 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것을 인지들을 하고

< 간서명 란 >

의 장



- 61 -

지혜를 모았으면 되었을 텐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방송에 한번 나온 거 한 5년은 못 잊습니다. 5년은 회복을 못합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평의원 강희진 : 그러면 하단에 기사라도 하나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습하고 있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일이다. 그렇게 해도 수습이 안 되거든요.

의장 강명구 :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떠오른 문구는 버나드 쇼(Bernard Shaw)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저희가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했고 보고서 나오고서도 10월, 11월, 12월 세달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답변이 없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답답해서 (지난번에 평의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어렵습니까? 형식만 갖춰서 하면 처리해주시면 되는데...” 총장님 명의 답화문이 나오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편드 거래 내역 엑셀 표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회의 끝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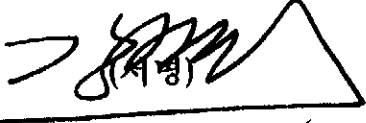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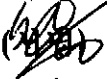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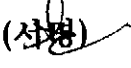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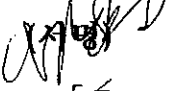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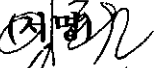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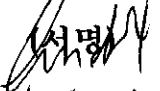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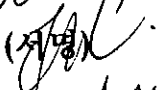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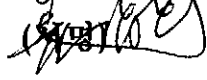
< 간서명 란 >

의 장



- 62 -

2013년 1월 18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흥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간 사	김승권	(서명)